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 7. 1. 시행)되었으나, 기업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별 시행시기를 규정하였고,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예방요율 적용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개정 근로기준법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실근로시간 단축 등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인 개정규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사항으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제18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나. 재해예방활동 인정 사항으로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신설함에 따라 재해예방활동별 산재보험료를 인하율,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사유를 규정(제18조의2제2항제4호, 제18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5제2항제4호 신설)

다. 재해예방활동을 중복으로 실시한 경우 적용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제18조의2제3항 신설)

라. 1주간 근로시간의 52시간 이하 단축 실시,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하는 경우를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규정(부칙 제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경우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4호의 경우:

$\frac{10 \times \text{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100 \times 365}$
--

③ 제1항 각 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의 제2항에 따른 인
하율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
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

3. 제1항제3호의 재해예방활동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인하율에 제3호의 인하율을 합산하여 적용

4. 제1항제4호의 재해예방활동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인하율에 제4호의 인하율을 합산하여 적용

5. 제1항제1호의 재해예방활동과 제1항제3호 그리고 제4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과 제1호의 인하율을 합산하여 적용

6. 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활동과 제1항제3호 그리고 제4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과 제2호의 인하율을 합산하여 적용

제18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의5제2항에 제4호부터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 조치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예방요율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① 제18조의2제1항제3호, 제18조의2제2항제3호, 제18조의2제3항제2호, 제18조의2제3항제3호, 제1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8조의5제2항제3호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8조의2제1항제4호, 제18조의2제2항제4호, 제18조의2제3항제4호, 제18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5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해 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이하 “인하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u>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계</u>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경우</u> ② ----- ----- ----- ----- ----- ----- --. <u><후단 삭제></u>

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하며, 제1항제3호의 재해예방활동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인하율에 제3호의 인하율을 합산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4호의 경우:

$$\frac{10 \times \text{전년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일수}}{100 \times 365}$$

③ 제1항 각 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의 제2항에 따른 인하율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 (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

하는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

3. 제1항제3호의 재해예방활동
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인하율에 제3호의
인하율을 합산하여 적용

4. 제1항제4호의 재해예방활동
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인하율에 제4호의
인하율을 합산하여 적용

5. 제1항제1호의 재해예방활동과
제1항제3호 그리고 제4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인하
율 중에서 더 높은 것과 제1호
의 인하율을 합산하여 적용

6. 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활동과
제1항제3호 그리고 제4호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인하

제18조의3(재해예방활동의 인정 기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인정기간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18조의5(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① (생략) ② 법 제15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u><신설></u>	<u>을 중에서 더 높은 것과 제2호 의 인하율을 합산하여 적용</u> 제18조의3(재해예방활동의 인정 기간 등)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8조의2제1항제4호의 경 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 은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u>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5(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취소 제외 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 환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705